

대구사이버대학교 강사 임용규정

(제정 2019.07.01)
(최종개정 2026.0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강사의 임용·복무·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여 교육·지도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자로서 계약에 의하여 근무기간,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강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자로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강의 1년 이상 유경험자
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1년 이상 수료자
3. 기타 총장이 사유를 참작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자

제2장 임용

제4조(임용시기)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의 경우 정년이 도달하는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과목 담당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퇴직·사망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6조(임용절차 및 임용계약조건) ① 강사의 임용은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의 검증·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장이 다음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강사 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임용기간
 2. 임금: 「강사료 및 제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학기단위로 책정한 후,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 가. 강의시간: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 나. 복무 등 근무조건: 「강사 임용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조건
 4. 면직사유: 「강사 임용규정」에서 정하는 면직사유
 5. 재임용 요건 및 절차: 「강사 임용규정」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정한 요건에서 정하는 재임용 요건
- ② 강사에게는 신규 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채용절차에 따른다.

제7조(의무)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용기간 동안 담당과목의 강의 및 운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강의계획서 및 성적 입력, 성적표 제출 등 수업관련 사항들을 소정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4. 교육자로서의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제8조(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수업운영 및 콘텐츠개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강사의 채용 및 강사와 관련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장 공개채용

제9조(강사채용계획) 교무처장은 학기단위로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별 채용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여 강사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확정한다.

제10조(공개채용) ①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사의 공개채용에 따른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총원대상 결정 및 공고
2. 기초심사
3. 전공심사
4. 면접심사
5.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검증·심의
6.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

③ 강사 채용 공고는 5일 이상 채용분야 담당교과목 및 주당 강의시간, 채용인원, 자격기준,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한다.

④ 강사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초빙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강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최종학위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 등록증명서(외국인에 한함)
6.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해당자에 한함)
8. 온라인 강의 영상 샘플(해당자에 한함)

⑤ 지원서 입력착오 및 허위입력으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채용 대상자 우대 등) ① 학문후속세대에게 교육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다. 학문후속세대란 대학원생과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연구 인력을 말한다.

② 채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겸임 또는 초빙교원이 강사 채용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직원을 제출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서류):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및 지원자격 심사
2. 전공심사(서류): 지원자의 교과목 담당 전문성, 교육 및 연구경력, 현장실무경력 등에 관한 심사
3. 면접심사: 지원자의 교육자적 자질·열정, 인성 등에 관한 심사

제13조(심사절차) ①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12조의 심사항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② 강사의 자격인정에 해당하는 경력인정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각 단계별 심사 항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④ 각 단계별 심사는 강사 신규채용 심사표(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하되,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⑤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만 실시하거나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도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에서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동일 초빙분야(동일과목)에 대하여 지원자에 따라 심사방법을 달리할 수 없다.

제14조(기초심사와 전공심사) 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력, 경력, 채용분야와의 전공일치도,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등 지원자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교무처장, 해당 학과(부)장,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5조(면접심사) ① 면접대상자는 서류심사 통과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교무처장, 해당 학과(부)장,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면접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임용예정자 및 임용대상자) ① 전공심사(면접심사를 통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 심사위원의 산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임용예정자에 포함한다.

② 임용예정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분야별 2배수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심사별 반영비율은 기초심사는 P/F, 전공심사 50%, 면접심사 5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심사와 면접심사(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점수가 높더라도 기초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③ 임용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임용예정자 중에서 총장이 정하며, 임용계약 당사자가 된다.

제17조(임용포기) 임용예정자가 학기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을 포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과목 담당자를 지정한다.

1. 해당 교과목의 공개채용 지원자 중 차순위자 순
2. 해당 교과목 강의를 가능한 전임교원
3. 신규 강사의 공개채용

제18조(임용서류제출) 임용예정 통보를 받은 자는 임용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력조회 등) ①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임용예정자의 신원조회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제5장 재임용

제20조(재임용 절차 및 기준 등) ① 총장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당해 교원에게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하며, 소속학과(부)의 강사 재임용 요구(별지 제8호 서식)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 심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총장은 교무처장, 해당 학과(부)장,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위원 1인을 재임용 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임용 심사를 「강사 재임용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임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사 재임용 요건은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해당 강사에게 지정된 날짜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⑥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심의가 지체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임용 탈락자에 대하여는 재임용 거부 의사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1. 재임용 요건[별표 3]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법률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⑧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강의 제한 등)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강의시간 및 근무조건 등

제22조(강의시간) ①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②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계절학기 강의를 위해 강사를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임용 중인 강사를 활용한다.

제23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교육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교내의 활동에 있어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④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⑤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코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강사가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강의 등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휴직 등)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② 강사가 임용기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급여 등) ① 강사에게는 담당교과목에 대해 교수하는 시간 뿐 아니라 담당 강의를 계획·준비하고, 수강학생의 학습지도, 평가 환류 등 운영,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의 대가를 본 대학교의 강사로 산정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정한다.

② 강사의 급여는 학기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계절학기 담당교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④ 강사에게 계약기간 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경우 4주분의 강의료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채용절차를 거쳐 신규임용된 학기로부터 연속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재직기간, 강의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26조(면직) 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면직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해당 콘텐츠의 유지보수, 재개발, 폐지(미사용), 새로운 콘텐츠 신규개발 등으로 콘텐츠 또는 교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7. 강의운영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8. 강의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강의내용, 교수자의 강의태도 등 강의 전반에 대한 수강생들의 민원이 잦은 경우
10. 수업평가결과 강의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1. 수업운영 관련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12. 교원으로서 성실히 강의 전반에 임하지 않는 경우
13.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14. 교수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강의계속이 불가능한 때
15.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1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교수자로서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총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 가. 해당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
- 나.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때
- 다.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2.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가.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나. 담당하는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의 폐지
- 다.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입교원을 채용한 때
- 라. 「강사 임용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해 강사 임용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⑤ 전 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는 노동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임용기간 만료 후에는 면직 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7조(당연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면직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재임용이 거부된 자
- 4.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제7장 기타

제28조(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을 시행일로 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더불어 「대구사이버대학교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21학년도 1학기 강사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강사 퇴직금은 강사법 시행(2019.8.1.)이후 신규임용된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강사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년도 학기 대구사이버대학교					
강 사 초 빙 지 원 서					
지원학과(부)					
초빙분야 (담당과목)	1학기				
	2학기				
	※ 학기당 2과목까지 기재 가능				
성 명	(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우: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구 분	기간(년월일)	학교명	학과(부)명	전 공	학위명
전문학사	. . . - . . .				
학 사	. . . - . . .				
석 사	. . . - . . .				
박 사	. . . - . . .				
전공관련 자격증·면허증					
취득년월일	종 류			시행기관	
. . .					
. . .					
. . .					
. . .					
. . .					

경 력 사 항

1. 교육경력

기 간	근무년수	환산비율	대학구분	근 무 처	직위(명)	직무구분	평균강의 시간/주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2. 연구경력

기 간	근무년수	환산비율	근 무 처	직위(명)	담당직무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3. 현장실무경력

기 간	근무년수	환산비율	근 무 처	직위(명)	담당직무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강 의 계 획 서

지원분야	학과(부):		초빙분야:		성 명		
과 목 명	국문						
	영문						
교과구분				학 점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 재	NO	교재명	저자수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수업유형 및 수업방법	☐ 강의형 ☐ 실습형 ☐ 프로젝트형(개인 및 팀) ☐ 사례탐구형 ☐ 세미나형 ☐ 기타						
과 제							
평가방법 (합계: 100점)	출석	20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프로젝트		세미나		기타
수업 내용	주차	학습주제 및 내용			활동 및 설계내용		
	1						
	2						
	3						
	4						
	5						
	6						
	7						
	8	중간고사					
	9						
	10						
	11						
	12						
	13						
	14						
15	기말고사						

강사 신규채용 심사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지원분야	학과(부):		초빙분야:

1. 기초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			
		위원1	위원2	위원3	평가결과 (P/F 결과)
최종학위 소지 및 전공일치도	대학명, 전공명, 학위명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 ※ 지원자격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교육 및 연구경력: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각 1년 이상 또는 합이 2년 이상)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교육 및 연구경력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2인 이상 “P” 면 적합

2.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 ※ 해당되는 경우 √ 표시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			
		위원1	위원2	위원3	평가결과 (100~40)
교과목 담당 전문성	강의(교육) 전문성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현장실무경력	현장실무경력의 우수성				

-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 심사시 초빙전공분야를 기준으로 심사 요망
- ※ “우수”: 80점 이상, “보통”: 79점~60점, “미약”: 59점~40점
- ※ 평가 결과는 위원들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재(60점 이상인 자만 최종 심사대상)

3.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 실시() ※ 해당되는 경우 √ 표시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			
		위원1	위원2	위원3	평가결과 (100~40)
전공심사 결과 및 교육자적 자질·열정, 인성 등	-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 학교·학과발전예의 기여도(예상) - 학교·학과에 대한 이해도 - 시범강의 충실도				

-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 “우수”: 80점 이상, “보통”: 79점~60점, “미약”: 59점~40점
- ※ 평가 결과는 위원들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재(60점 이상인 자만 최종 심사대상)

심사결과	추천여부(○ , ×), 추천순위()
------	------------------------

강사 신규채용 심사표

성명		생년월일	
지원분야	학과(부):		초빙분야:

1. 기초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P/F)
최종학위 소지 및 전공일치도	대학명, 전공명, 학위명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 ※ 지원자격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교육 및 연구경력: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각 1년 이상 또는 합이 2년 이상)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교육 및 연구경력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2인 이상 “P” 면 적합

2.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 ※ 해당되는 경우 √ 표시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100~40)
교과목 담당 전문성	강의(교육) 전문성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현장실무경력	현장실무경력의 우수성	

-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 심사시 초빙전공분야를 기준으로 심사 요망
-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79점~60점, “미약” : 59점~40점
- ※ 평가 결과는 위원들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재

3.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 실시() ※ 해당되는 경우 √ 표시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결과(100~40)
전공심사 결과 및 교육자적 자질·열정, 인성 등	-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 학교·학과발전예의 기여도(예상) - 학교·학과에 대한 이해도 - 시범강의 충실도	

-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79점~60점, “미약” : 59점~40점
- ※ 평가 결과는 위원들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강사 재임용 심사신청서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임용기간	

1. 강의 실적 * 임용기간내 실적만 작성

연번	개설년도/학기	개설학과	교과목명	학점	수강생 수
1					
2					
3					
4					
5					
6					

2. 교육 철학 * 해당사항 기술

3. 기타 사항

- * 학과에서 필요한 평가항목에 관한 실적(해당자에 한함)
- * 전공 관련 자격증 보유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 첨부자료: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 각 1부

위와 같이 재임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강사 재임용 심사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소속		담당과목	

심사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평점
공통 평가항목 (100점)	1) 강의계획(10)	■ 수업계획서는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2) 강의내용(30)	■ 수업내용은 본 과목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을 충분히 포괄하였는가? ■ 수업방법(예: 강의, 실습, 사례탐구, 토론, 세미나 등)은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가?	
	3) 평가 및 환류(20)	■ 학습자의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평가방법은 공정하였는가? ■ 평가내용은 수업목표 및 수업내용에 부합하여 제시되었는가?	
	4) 수업평가결과(30)	■ 학습자의 수업평가 결과는 적정수준 이상인가? * 담당과목의 평균 수업평가점수 배점기준 95점 이상: 30점 90점 이상~95점 미만: 25점 85점 이상~90점 미만: 20점 80점 이상~85점 미만: 15점 80점 미만: 10점	
	5) 학사행정처리(10)	■ 각종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였는가? * 소정기한 내 미처리 건수 배점기준 모두 준수: 10점 1건 미준수: 8점 2건 미준수: 6점 3건 이상 미준수: 4점	
소 계			

심사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P/F
면직사유	6)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P/F)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등	
	7)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P/F)	■ 교육과정 개편 ■ 건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재임용 평정 결과	추천 () / 거부 ()
-----------	-----------------------

강사 재임용 심사표

성명		생년월일	
소속		담당과목	

심사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평점
공통 평가항목 (100점)	1) 강의계획(10)	■ 수업계획서는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2) 강의내용(30)	■ 수업내용은 본 과목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을 충분히 포괄하였는가? ■ 수업방법(예: 강의, 실습, 사례탐구, 토론, 세미나 등)은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가?	
	3) 평가 및 환류(20)	■ 학습자의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평가방법은 공정하였는가? ■ 평가내용은 수업목표 및 수업내용에 부합하여 제시되었는가?	
	4) 수업평가결과(30)	■ 학습자의 수업평가 결과는 적정수준 이상인가? * 담당과목의 평균 수업평가점수 배점기준 95점 이상: 30점 90점 이상~95점 미만: 25점 85점 이상~90점 미만: 20점 80점 이상~85점 미만: 15점 80점 미만: 10점	
	5) 학사행정처리(10)	■ 각종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였는가? * 소정기한 내 미처리 건수 배점기준 모두 준수: 10점 1건 미준수: 8점 2건 미준수: 6점 3건 이상 미준수: 4점	
소 계			

심사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P/F
면직사유	6)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P/F)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등	
	7)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P/F)	■ 교육과정 개편 ■ 건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강사 재임용 거부 사유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담당교과목

<재임용 거부 사유>

(50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재 요망)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기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인)

(인)

위원:

(인)

(인)

(인)

수업콘텐츠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재)임용(과목) 포기원

[illegible]

강사 재임용 요구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 만료 강사)

성명	생년월일	소속	담당 예정 교과목			
			학기	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3년 보장 기간 초과 재임용 사유>

상기와 같이 강사 재임용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전임교원:

(인)

(인)

(인)

학과장:

(인)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1]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

1. 교육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 고
제1류	100%	학력을 인정받는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2류	8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대우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강의전담교수
제3류	7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의조교로 근무한 경력 (대학 총·학장 발령)	
제4류	50%	고등학교 이하의 교사 경력	
	5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주당 5시간 이상) 등

2. 연구경력·현장실무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 고
제1류	100%	석·박사 학위과정(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전임 70% 비연구기관 70%
제2류	80%	전공과 관련된 1개 이외의 동일 학위에 대한 경력(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류	70%	실무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전임 50%
	7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연구조교(연구원)로 근무한 경력(대학 총·학장 발령)	유급·전임조교(연구원)
제4류	50%	제1~3류 외의 근무 경력	행정조교 무급·전임조교(연구원) 자체조교(기관장발령)

[별표 2] 공개채용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구분	심사항목	평점만점	심사방법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P/F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 또는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전공심사(면접심사를 통합하는 경우 포함) 결과 심사위원의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최종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음 - 위원별 이견이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전공심사	- 지원자의 교과목 담당 전문성, 교육 및 연구경력, 현장실무경력 등에 관한 심사	100	
면접심사	- 전공심사 결과 - 교육자적 자질·열정, 인성 등	100	

[별표 3]

강사 재임용 요건

○ 강사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별 재임용 요건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통평가항목(100점 만점)' 에서 평점 70점 이상 취득

- 개발교수와 운영교수가 불일치할 경우 공통 평가항목 기준에서 1)강의계획, 2)강의내용은 70%의 점수를 인정한다.
- 강의가 폐강된 경우 공통 평가항목 기준에서 3)평가 및 환류, 4)수업평가결과는 70%의 점수를 인정한다.
- 임용기간내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 임용 전 본교의 강의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면직사유' 에서 모두 P(pass) 취득

심사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평점기준
공통 평가항목 (100점)	1) 강의계획	■ 수업계획서는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10점
	2) 강의내용	■ 수업내용은 본 과목에서 습득해야할 지식을 충분히 포괄하였는가? ■ 수업방법(예: 강의, 실습, 사례탐구, 토론, 세미나 등)은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였는가?	30점
	3) 평가 및 환류	■ 학습자의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평가방법은 공정하였는가? ■ 평가내용은 수업목표 및 수업내용에 부합하여 제시되었는가?	20점
	4) 수업평가결과	■ 학습자의 수업평가 결과는 적정수준 이상인가? * 담당과목의 평균 수업평가점수 배점기준 95점 이상: 30점 90점 이상~95점 미만: 25점 85점 이상~90점 미만: 20점 80점 이상~85점 미만: 15점 80점 미만: 10점	30점
	5) 학사행정처리	■ 각종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였는가? * 소정기한 내 미처리 건수 배점기준 모두 준수: 10점 1건 미준수: 8점 2건 미준수: 6점 3건 이상 미준수: 4점	10점
면직사유	6)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P/F

		없을 때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상기 이외에 규정 26조 관련 사항	
	7)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 교육과정 개편 - 해당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 -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때 - 해당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 건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담당하는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의 폐지 - 담당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입교원을 채용한 때 - 「강사 임용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해 강사 임용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P/F

※ “우수” : 90점 이상, “보통” : 89점~70점, “미약” : 70점 미만

강사 퇴직금 산정기준

* 근거: 2021.3.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강사 퇴직금 지원 관련 안내」 기준)		
1. 각 학기별로 다음의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며 계약 기간 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자임		
가. 강의를 신규(재개발 포함) 제작하는 학기의 소정근로시간 (과목당)		
: 강의 준비시간(강의시간×2배)+강의시간		
나. 사전 제작 강의를 변경 없이 활용하는 학기의 소정근로시간 (과목당)		
: 강의 준비시간(강의시간×0.5배)+강의시간		
다. 강의를 유지보수하는 학기의 소정근로시간 (과목당)		
: 강의 준비시간(강의시간×0.5배)+강의시간		
라. 분반이 있는 경우 각각 계산하되, 신규(재개발 포함) 제작하는 강의가 분반하는 경우 한 반에만 강의준비시간 2배 적용		
(예시) 분반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구분	A반	B반
신규제작 (재개발포함)	강의 준비시간(강의시간×2배)+ 강의시간	강의 준비시간(강의시간×0.5배)+ 강의시간
사전제작 (유지보수포함)	강의 준비시간(강의시간×0.5배)+ 강의시간	강의 준비시간(강의시간×0.5배)+ 강의시간
2. 재직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강의한 학기만 적용하며 기간은 최소 1년, 최대 3년		
3. 강의시간, 강의료는 재직기간 중 가장 최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강의한 학기 기준 적용. 이때, 담당과목의 강의료가 각기 다를 경우 높은 강의료 기준 적용		